

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. 3. 6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년 2월 19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8년 2월 22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제5차 행정위원회(2018. 3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진정래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원금 환수 등에 있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일괄 개정대상 조례
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」 등 4개 조례

○ 주요 개정사항

-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 정비
- 정비내역

조례명	정비사항	비고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	제8조제2항 “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.” → 조항 삭제	안 제2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 조례	제9조제3항 “제2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지방세 징수법」 제33조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” → 조항 삭제	안 제3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	제8조 중 “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.” → 삭제	안 제4조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	제11조제2항 “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검진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「지방세징수법」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” → 조항 삭제	안 제5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원금 환수 등에 있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2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」 제8조제2항 “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

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.”를 조항 삭제 하였으며,

- 안 제3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이용 요금 지원 조례」 제9조제3항 “제2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지방세 징수법」 제33조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”를 조항 삭제 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 중 “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”를 삭제 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 2항 “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검진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「지방세 징수법」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”를 삭제 하였음.

○ 검토결과, 기타 상위법령 및 자구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33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지원금 환수 등에 있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일괄 개정대상 조례

- 1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- 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
- 3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- 4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

나. 주요 개정사항

- 1)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 정비(안 제2~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(2018.1.18. ~ 1.29. / 11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
한 조례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」
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
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2항을 **삭제**한다.

**제3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
지원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
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3항을 **삭제**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
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 중 “**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
따른다.**”를 **삭제**한다.

**제5조(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
정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·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
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2항을 **삭제**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환수 등) ① (생 략) ② <u>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.</u>	제8조(환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삭 제>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지원의 중지 및 환수) ① 생략 1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 ③ <u>제2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지방세 징수법」 제33조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</u>	제9조(지원의 중지 및 환수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<삭 제>

